

서울고등법원

제 8 형사부

결 정

사 건 2006초기302 재정신청

신 청 인


피 의 자 1. 박홍우  
2. 이상훈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06형제70157호 2006. 7. 24.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 등본입력다  
200년월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정동찬  


1. 재정신청의 경위

가. 신청인은 1991. 3. 1.부터 성균관대학교의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하자 2005.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9. 21. 패소판결을 받자 같은 해 10.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나. 한편 피의자 이상훈은 2005. 10.경부터 위 항소사건(2005나84701)을 담당했던 재판부의 재판장이었는데 2006. 2.경 법관정기인사로 인하여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였고, 그 후 피의자 박홍우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가 위 항소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 신청인은 2006. 6.경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피의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의 요지는 “피의자 이상훈은 위 항소사건을 담당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받고도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피의자 박홍우는 위 항소사건을 담당하면서 선고를 지연하고, 재판기일에 청구취지변경과 관련된 자신의 말을 바꾸었으며, 증거에 관한 진술을 변론준비절차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변론 녹음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상대방의 실기한 방어방법에 대한 신청인의 각하신청을 기각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고 양심에 따른 재판 진행을 하지 아니하여 양심에 따른 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조 등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피의자들의 위와 같은 재판진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는 것이다.

라. 이에 대해 위 고소사건의 주임검사는 2006. 7. 24. 피의자 이상훈에 대하여는 동일 사건(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06형제42529호)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피의자 박홍우에 대하여는 고소장의 기재 및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의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위 불기소처분사실을 통지받은 뒤 이에 대한 불복으로 2006. 7. 31. 이 사건 재정신청을 제기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관인 피의자들이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이 신청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8.

재판장

판사

허 만



판사

강상욱



판사

김용배

